

## 제 8 장 조직규정

### 제 8.1 조 공동위원회

1. 당사국들은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장관 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장관이 임명한 고위공무원이 수석대표를 맡은 당사국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2. 공동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특히 이 협정 규정의 적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에 의하여, 이 협정에 포함된 구체적인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 나.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과 관련된 무역장벽 및 그 밖의 제한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 다. 이 협정의 추가적인 발전을 감독한다.
  - 라.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한다.
  - 마.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위원회 및 작업반은 공동위원회가 정한 권한 하에서 활동한다.
4. 공동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권고를 할 수 있다.

5.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집된다. 그 후,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는 소집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 2년마다 소집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동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언제든지, 다른 당사국들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하여, 공동위원회의 특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7.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8항을 조건으로 하여, 공동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의 발효일을 정할 수 있다.

8. 공동위원회에서 어느 당사국의 대표가 헌법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결정을 수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결정은, 결정 그 자체가 그 이후의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마지막 당사국이 자국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통지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자국의 내부 요건을 충족한 당사국의 하나인 경우, 자국의 내부 요건을 충족시킨 당사국들에 대하여 결정이 발효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상 요건을 조건으로, 공동위원회의 결정이 발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 8.2 조 사무국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권한있는 기관을 각 당사국의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정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그리고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

2. 제10.7조를 저해함이 없고,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에 대한 또는 당사국에 의한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 또는 통지는 자국의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